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과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는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예술진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과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체험·강연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예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공연 관람
3.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4.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교류
5. 기타 상호협력에 필요한 협조

제4조(비밀엄수)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자동 연장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 다만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7조(기 타)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22일

대표이사 이 경 희



센터장 이 채 관

